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7 선고 2022가단1034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운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 26,000,000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을 주식회사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은행	보증기한	변경 (보증금액 및 기한)
2017. 9. 29.	255,000,000원 (30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2018. 9. 28.	164,900,000원 2021. 9. 24.
2017. 9. 29.	340,000,000원 (400,000,000원)	D은행	2018. 9. 28.	329,800,000원 2021. 9. 24.

나. 위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다. 그런데 2021. 6. 26. B의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2021. 10. 15.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167,076,214원을, 2021. 11. 19. D은행에게 합계 335,497,85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액 중 일부 회수된 금원을 제외하고 그 밖에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합한 위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21차전120327호)을 신청하여 2022. 1. 26. ‘B은 원고에게 454,174,796원 및 그 중 118,302,786원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335,497,858원에 대하여 2021. 11. 20.부터 각 2022. 1. 1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6. 29.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21. 7. 6.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6919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1. 6. 29.에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각 보증약정이 2017. 9. 29.부터 각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직전인 2021. 6.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네 달 정도 지난 무렵인 2021. 10. 15.과 2021. 11. 19. 사이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실제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시가 약 2,552,940,700원 상당의 적극 재산이 있는 반면,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적극 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7,759,580,7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자 중 피고에게만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의 대여를 부탁받고 2021. 6. 25. 합계 26,000,000원을 B에 대여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자 중 피고에게만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 등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데,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F 유한회사(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이 신청하여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이 2022. 5. 1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6,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에 앞서 2022. 3. 7. 피고의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카단10294)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B에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 26,000,000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을 B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별지